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·의결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

내 용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며,

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,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·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,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9조의4에 따르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자진퇴직수당 및 법 명예퇴직수당·조기퇴직수당의 지급,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,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,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,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급속승진 임용,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,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」(행정자치부 예규) 5. 임용계획 수립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서를 갖추어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경상남도에서는 일하는 도정구현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가시적인 성

과를 거두기 위해 도지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보좌할 ○○○○○(○○ ○○상당) 채용 계획을 2015. 12. 3 수립한 후, 같은 날 담당자출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서면 심의·의결을 득한 후 2015. 12. 3.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였다.

또한, 도지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보좌할 ○○○○○장(지방○○ 상당) 채용 계획을 2015. 12. 16 수립한 후, 같은 날 담당자 출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서면 심의·의결을 득한 후 2015. 12. 16.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경남도지사는

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